

라오스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라오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10,000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산업통상부와 구매자 간의 계약서	p3~8

[첨부. 산업통상부와 구매자 간의 계약서]



ສາທາລະນະລັດ ປະຊາທິປະໄຕ ປະຊາຊົນລາວ
ສັນຕິພາບ ເອກະລາດ ປະຊາທິປະໄຕ ເອກະພາບ ວັດທະນາຖາວອນ

ແຂວງອັດຕະປື
ພະແນກອຸດສາຫະກຳ - ການຄ້າ

ເລກ
ອັດຕະປື

번호 및 일자

ສັນຍາຊື້ - ຂາຍໄມ້ ສະໜາມ II

- ອີງຕາມ ຄຳສັ່ງຂອງນາຍົກລັດຖະມົນຕີ ສະບັບເລກທີ 15/ນຍ, ລົງວັນທີ 13 ພຶດສະພາ 2016 ວ່າດ້ວຍການເພີ່ມທະວີຄວາມເຂັ້ມງວດໃນການຄຸ້ມຄອງ ແລະ ກວດກາການຂຸດຄົ້ນໄມ້, ເຄື່ອນຍ້າຍໄມ້ ແລະ ທຸລະກິດໄມ້.
- ອີງຕາມ ລະບຽບການຊື້ - ຂາຍໄມ້ ຢູ່ສະໜາມ II ສະບັບເລກທີ 1726/ອຄ.ກຂອ, ລົງວັນທີ 23/08/2012 ຂອງກະຊວງອຸດສາຫະກຳ ແລະ ການຄ້າ.
- ອີງຕາມ ຂໍ້ຕົກລົງຂອງເຈົ້າແຂວງ ສະບັບເລກທີ 1110/ຈຂ.ອປ, ລົງວັນທີ 24 ພະຈິກ 2017 ວ່າດ້ວຍການອະນຸມັດຂາຍໄມ້ທີ່ໄດ້ຜ່ານການປະມຸນແລ້ວ ຈຳນວນ 02 ບັນຊີ, ບໍລິມາດ : ມ3 (ບ້ວງໄມ້ຍືດລິດ ຄັນ).

ພະແນກອຸດສາຫະກຳ ແລະ ການຄ້າແຂວງ ແລະ
ເຊິ່ງຕໍ່ໄປນີ້ເອີ້ນວ່າ ຝ່າຍຂາຍ
ເບີໂທລະສັບ : 036 211 017
ແຟັກ : 036 211 017

구매자 정보

ທັງສອງຝ່າຍໄດ້ຕົກລົງຊື້ - ຂາຍໄມ້ນຳກັນ ມີເນື້ອໃນ ແລະ ເງື່ອນໄຂລະອຽດດັ່ງນີ້ :

ມາດຕາ 1 : ວ່າດ້ວຍປະເພດໄມ້ ແລະ ບໍລິມາດ (ອີງຕາມບັນຊີໄມ້ (Loglist)) ຂອງພະແນກກະສິກຳ - ປ່າໄມ້ແຂວງ ສະບັບເລກທີ 179/ປມຂ17, ລົງວັນທີ 12/07/2017.

- 1.1 : ໄມ້ຄຸ້ມຄອງ 1,2,3 : ໄມ້ຈິກ ບໍລິມາດ ມ3.
- 1.2 : ໄມ້ຫວງຫ້າມ, ໄມ້ພິເສດ : ໄມ້ປະດິງ ບໍລິມາດ ມ3, ໄມ້ດູ່ ບໍລິມາດ ມ3 ແລະ ໄມ້ແດງ ບໍລິມາດ ມ3.
- 1.3 : ບໍລິມາດ ລວມ : ມ3.

ມາດຕາ 2 : ວ່າດ້ວຍລາຄາ, ມູນຄ່າ (ອີງຕາມໃບຄິດໄລ່ ສະບັບເລກທີ ____/ອຄ.ອປ, ລົງວັນທີ _____ ຂອງພະແນກອຸດສາຫະກຳ ແລະ ການຄ້າແຂວງ), ລາຄາພັນທະໄມ້ໄດ້ຄິດໄລ່ດັ່ງນີ້ :

- ໄມ້ຫວງຫ້າມ, ໄມ້ ພິເສດ

ລ/ດ	ເນື້ອໃນ	ບໍລິມາດໄມ້ (ມ3)	ມູນຄ່າລວມເປັນເງິນກີບ
01	ໄມ້ ປະດິງ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2	ໄມ້ 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3	ໄມ້ ແດງ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ໄມ້ຄຸ້ມຄອງ 1,2,3

ລ/ດ	ເນື້ອໃນ	ບໍລິມາດໄມ້ (ມ3)	ມູນຄ່າລວມເປັນເງິນກີບ
01	ໄມ້ ຈິ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ມູນຄ່າລວມ ເປັນຕົວເລກ : () ກີບ

ມູນຄ່າລວມ ເປັນຕົວໜັງສື : ()

- ມູນຄ່າເພີ່ມຈາກການປະມຸນ ຈຳນວນ : ກີບ.

- ລວມມູນຄ່າຕ້ອງມອບທັງໝົດ ຈຳນວນ : ກີບ ()

ແລະຄ່າອາກອນ (ອກລ + ອມພ).

(ລາຍລະອຽດເບິ່ງຕາມໃບຄິດໄລ່ທີ່ຕິດຄັດມາພ້ອມ)

ມາດຕາ 3 : ວ່າດ້ວຍມາດຖານ, ເງື່ອນໄຂການຊື້.

3.1 : ຝ່າຍຊື້ຕ້ອງຊື້ໄມ້ທ່ອນ, ໄມ້ຕັບ ຕາມບໍລິມາດທີ່ໄດ້ປະມຸນ ໃນມາດຕາ 1 (ຂໍ້ 1.3) ຂອງສັນຍາສະບັບນີ້ ເພື່ອນຳໄປຜະລິດເປັນຜະລິດຕະພັນສຳເລັດຮູບຈຳໜ່າຍພາຍໃນ ແລະສົ່ງອອກຕ່າງປະເທດ.

3.2 : ຝ່າຍຊື້ຕ້ອງຮັບເອົາໄມ້ທີ່ປະມຸນໄດ້ທັງໝົດ ເພື່ອໄລ່ລຽງ ແລະຖອກພັນທະຕ່າງໆ.

ມາດຕາ 4 : ວ່າດ້ວຍການຄິດໄລ່ລາຄາພັນທະໄມ້ ແລະການສຳລະສະສາງ.

4.1 : ຝ່າຍຊື້ຍິນດີສຳລະຄ່າພັນທະໄມ້ ຕາມບໍລິມາດໄມ້ທີ່ໄດ້ລະບຸໄວ້ ໃນມາດຕາ 1 (ຂໍ້ 1.3) ແລະຍິນດີປະຕິບັດການຄິດໄລ່ລາຄາພັນທະໄມ້ ທີ່ໄດ້ລະບຸໄວ້ໃນມາດຕາ 2 ຂອງສັນຍາສະບັບນີ້.

4.2 : ເພື່ອຮັບປະກັນ ການປະຕິບັດສັນຍາສະບັບນີ້ ຝ່າຍຊື້ຍິນດີສຳລະເງິນຄ່າພັນທະໄມ້ ຈຳນວນ 100 % ມູນຄ່າແມ່ນ :

ກີບ.

ມາດຕາ 5 : ວ່າດ້ວຍການກວດກາຄຸ້ມຄອງ.

5.1 : ປະຕິບັດຕາມແຈ້ງການຮ່ວມຂອງກະຊວງອຸດສາຫະກຳ - ການຄ້າ ແລະກະຊວງກະສິກຳ - ປ່າໄມ້ ກ່ຽວກັບການຄຸ້ມຄອງໄມ້ຜະລິດຕະພັນໄມ້ ແລະເຄື່ອງປ່າຂອງດຶງ ພາຍໃນປະເທດ ແລະເພື່ອສົ່ງອອກຕ່າງປະເທດ. ຝ່າຍຂາຍມີສິດກວດກາໄມ້ຂອງຝ່າຍຊື້ໄດ້ທຸກເວລາ.

5.2 : ຝ່າຍຊື້ ແລະຝ່າຍຂາຍ ບໍ່ມີສິດດັດແປງສັນຍາໂດຍລຳພັງໃຈ, ໃນເວລາປະຕິບັດສັນຍາຫາກມີບັນຫາໃດໜຶ່ງເກີດຂຶ້ນທີ່ບໍ່ໄດ້ລະບຸໄວ້ໃນສັນຍາ ທັງສອງຝ່າຍຍິນດີຫາວິທີແກ້ໄຂໃຫ້ລຸ່ມໄປດ້ວຍດີ ບົນພື້ນຖານຄວາມເປັນເອກະພາບກັນ ເພື່ອຮັບປະກັນຜົນປະໂຫຍດຂອງທັງສອງຝ່າຍ.

ມາດຕາ 6 : ວ່າດ້ວຍພັນທະຂອງຝ່າຍຊື້ ແລະຝ່າຍຂາຍ.

6.1 : ນອກຈາກປະຕິບັດພັນທະຢູ່ມາດຕາ 4 ຝ່າຍຊື້ຍິນດີປະຕິບັດ ຕາມລະບຽບການຊື້ - ຂາຍໄມ້ ທີ່ແຂວງ ແລະກະຊວງ ກຳນົດໄວ້ຢ່າງເຂັ້ມງວດ ແລະບໍ່ມີເງື່ອນໄຂອື່ນໆທັງຊັ້ນ.

6.2 : ພາຍຫລັງໄດ້ເຊັນສັນຍານຳກັນແລ້ວ ພາຍໃນກຳນົດ 3 ວັນ ຝ່າຍຊື້ຕ້ອງເອົາສັນຍາສະບັບນີ້ ໄປຈົດທະບຽນຊັບສິນ ໃຫ້ຖືກຕ້ອງຕາມລະບຽບກົດໝາຍ.

6.3 : ຝ່າຍຂາຍ ຈະແຈ້ງໃຫ້ຂະແໜງການທີ່ກ່ຽວຂ້ອງອຳນວຍຄວາມສະດວກໃນການປະກອບເອກະສານຕ່າງໆຂອງຝ່າຍຊື້.

ມາດຕາ 7 : ວ່າດ້ວຍການຊື້ສຸດສັນຍາ, ສັນຍາຈະຊື້ສຸດໃນກໍລະນີດັ່ງນີ້ :

7.1 : ຝ່າຍຊື້ລະເມີດສັນຍາໃນມາດ 4 ແລະມາດຕາ 6 ຂອງສັນຍາຊື້ - ຂາຍໄມ້ ສະບັບນີ້.

7.2 : ມີເຫດເຫລືອວິໄສເກີດຂຶ້ນທັງສອງຝ່າຍ.

7.3 : ລູກຄ້າຂອງຝ່າຍຊື້ມີການຮ້ອງຟ້ອງຄືນ ມາຫາຝ່າຍຂາຍໂດຍມີຂໍ້ມູນພຽງພໍ ແລະມີເອກະສານເປັນລາຍລັກອັກສອນຢັ້ງຢືນ.

7.4 : ໃນກໍລະນີມີຂໍ້ກຳນົດ, ບົດແນະນຳ ແລະແຈ້ງການຕ່າງໆຂອງລັດຖະບານອັນຮີບດ່ວນ ແລະເຂັ້ມງວດ ປະກາດແຈ້ງອອກໃນໄລຍະເວລາປະຕິບັດສັນຍາສະບັບນີ້.

7.5 : ໃນກໍລະນີຝ່າຍຊື້ ເອົາສັນຍາຊື້ - ຂາຍໄມ້ໄປຈຳນຳ ຫລືເປັນຫລັກຊັບຕໍາປະກັນ ແລະເອົາໄປໃຫ້ຜູ້ອື່ນປະຕິບັດ ຫລືໂອນ ໃຫ້ຜູ້ອື່ນ.

7.7 : ສັນຍາສະບັບນີ້ ນຳໃຊ້ໄດ້ທາງລັດຖະການ ນັບແຕ່ມີລົງລາຍເຊັນ ແລະຈົດທະບຽນເປັນຕົ້ນໄປ.

ມາດຕ.8 : ສັນຍາສະບັບນີ້ ໄດ້ສ້າງຂຶ້ນທີ່ພະແນກອຸດສາຫະກຳ ແລະການຄ້າແຂວງ ຈຳນວນ 6 ສະບັບ, ເຊິ່ງມີຄຸນຄ່າເທົ່າທຽມ ກັນທາງດ້ານກົດໝາຍ ແລະສັນຍາຕ້ອງໄດ້ນຳໄປຈົດທະບຽນຈຶ່ງສາມາດນຳໃຊ້ໄດ້ທາງດ້ານກົດໝາຍ.

ໝາຍເຫດ : ຖ້າວ່າບໍລິສັດ ບໍ່ໄປຖອກເງິນພາຍໃນກຳນົດ 7 ວັນ ໃຫ້ຫ້ອງການຄຸ້ມຄອງຊັບສິນຂອງລັດ ແຈ້ງໃຫ້ພະແນກອຸດສາ ຫະກຳ ແລະການຄ້າແຂວງ ຮັບຊາບໂດຍດ່ວນ ເພື່ອຈັດຕັ້ງປະຕິບັດ ຕາມາດຕາ 4 ຂອງສັນຍາສະບັບນີ້.

- ໃນກໍລະນີບໍລິສັດບໍ່ມາຖອກເງິນຕາມກຳນົດເວລາທີ່ໄດ້ລະບຸຂ້າງເທິງນີ້, ຖ້າຫ້ອງການຄຸ້ມຄອງຊັບສິນຂອງລັດ ບໍ່ ແຈ້ງໃຫ້ພະແນກອຸດສາຫະກຳ ແລະການຄ້າ, ພະແນກອຸດສາຫະກຳ ແລະການຄ້າ ຈະບໍ່ຮັບເອກະສານດັ່ງກ່າວນີ້ຄືນ.

ຫົວໜ້າພະແນກອຸດສາຫະກຳ ແລະ ການຄ້າແຂວງ

(ຝ່າຍຂາຍ)

ບໍລິສັດ

도장 및 서명

도장 및 서명

라오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평화 독립 민주주의 통일 번영

앗따쁘 주
산업통상부

번호: /산업통상부. 앗따쁘 주
일자:

제 II 야적장 목재무역 계약서

- 별채, 운송, 목재 사업의 관리 및 규제 강화에 대한 국무총리령 제15호, 2016.5.13일 자에 의거
- 제II 야적장의 목재 무역에 관한 산업통상부 규정 제1726호, 2012.8.23일자에 의거
- 입찰된 목재 판매 승인에 대한 주지사의 동의서 제1110호 의거, 2계정,
수량: _____m³(원목적재차량 _____대)

주 산업통상부

와

목재가공공장

이하 ‘판매자’ 로 칭한다.

이하 ‘구매자’ 로 칭한다.

전화:

전화:

팩스:

팩스:

무역등록번호:

납세등록번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거래의 내용과 조건에 합의한다;

제1조: 목재의 종류와 규격(원목 목록Loglist)에 대한 주 농림부 규정 제179/217호,
2017.7.12일자에 의거

1.1: 보호 수종 1,2,3: 마이쩍(발라우 혹은 방킬라이) 수량 _____m³

1.2: 금지 수종(정부 별채승인 요함), 특수 수종: 마이빠동(장미목 일종) 수량 _____m³,
마이두(버마 예보니, 장미목 일종) 수량 _____m³,마이댕(핑카도) 수량 _____m³

1.3: 총 수량 _____m³

제2조: (주 산업통상부에서 제 _____호 _____일자로 책정한) 목재 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 금지 수종, 특수 수종

분 류	수 종	규 격(m ³)	목재의 가격(Kip,깍)
01	마이빠둥		
02	마이두		
03	마이탱		

- 보호 수종

분 류	수 종	규 격(m ³)	목재의 가격(Kip,깍)
01	마이짚		

총금액:()깍 ()

- 입찰된 부가가치액: _____ 깍

- 총 부과액: _____ 깍(목재가격+세금)

(금액 내역은 첨부 된 인보이스 세부 정보에서 참조할 수 있다)

제3조: 목재 구매의 기준과 조건

3.1: 구매자는 계약 제1조(제1.3항)에 명시된 규격으로 원목을 구입, 제재한 후 제품을 국내에 유통판매 혹은 외국에 수출한다.

3.2: 구매자는 입찰된 목재를 전부 수락하여 청구된 금액을 지불한다.

제4조: 목재 가격 계산 및 지불

4.1: 구매자는 계약 제1조(제1.3항)에 명시된 규격과 제 2 조에 명시된 가격대로 목재금액을 지불한다.

4.2: 구매자는 이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된 목재가격 100%: _____ 깍을 전액 지불한다.

제5조: 검사와 관리

5.1: 구매자는 라오스 산업통상부와 농림부가 공고한 자국의 임산물과 비 목재 임산물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며, 판매자는 상시 구매자가 구입한 목재를 검사할 권한이 있다.

5.2: 판매자와 구매자는 임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이행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단결하여 해결책을 찾는다.

제6조: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무

- 6.1: 구매자는 계약 제 4 조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정부부처와 주정부의 규정을 여하한 조건 없이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
- 6.2: 계약 서명 3일 이내에 구매자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법규에 따라 자산등록을 해야 한다.
- 6.3: 판매자는 해당기관에 구비 서류를 신청한다.

제7조: 계약의 종료/해지 및 해지의 사유:

- 7.1: 구매자가 계약 제 4 조와 제 6 조를 위반했을 때
- 7.2: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 7.3: 구매자의 고객이 인증된 서면 자료 등의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판매자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 7.4: 계약 이행 기간 동안 정부가 긴급하고 엄격한 규정, 안내 등을 통보하는 경우
- 7.5: 구매자가 계약서를 담보로 저당을 잡혀 타인에게 계약서를 양도하고 이행하게 할 경우
- 7.6: 이 계약서는 서명과 등록 이후 유효하다

제8조: 주 산업통상부에서 작성한 이 계약서 총 6 부는 법적효력이 있으며, 계약서를 등록해야만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의: 당 회사가 정부의 자산 관리 사무소에 계약 제4조에 명시된 목재금액을 마감일 7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신속히 주 산업통상부에 이를 통보하여 지불한다.

- 상기에 명시된 대로 당 회사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자산관리소가 이를 산업통상부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서는 반환되지 않는다.

주 산업통상부장
(판매자)

(서명)

회 사
(구매자)

(서명)

라오스 가이드라인

라오스 산림청(Department of forestry, Lao PDR)은 귀국의 질문에 대한 합법목재 및 목재제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전에 부처의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에 관해 알리고자 한다.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가 산림 및 목재 관리를 담당하고,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가 목재제품 및 수출을 담당한다.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일반사항

0 라오스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일반적으로, 라오스의 산림지역들은 100% 정부가 소유한다.

0 라오스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생산림 등)로 구분됩니까?

- 라오스의 산림지역은 보호림, 보존림과 생산림이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 분류된다.

0 라오스의 산림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불법벌채 및 관련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는 어디이며, 연락처는 무엇입니까?

- 산림청(Department of Forestry, DOF, 중앙 차원), 지방산림부(Provincial Forestry Section, PFS, 지방 차원)와 지역산림과(District Forestry Unit, DFU, 지역 차원). 1)

1) 라오스 정부는 숲 관리와 보호를 위해 농림부가 산업통상부와 재무부와 공동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농림부는 조사, 벌채, 저목장 목재운반을 책임집니다.
- 산업통상부는 벌채된 목재의 경매와 구매계약을 책임집니다.
- 재무부는 정부 예산으로 기록된 목재 판매로부터 세입을 유지합니다.

벌채 허가 관련 사항

0 라오스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연간벌채계획은 정부가 작성한 제안서를 통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림법 06/NA 2007, 제 29조.

* 벌채 금지 지역 및 보호 수종 포함

- 수종을 늘리고 수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May Dou Lai(*Pterocarpus macrocarpus* 종), May Kha Nhoung(*Dalbergia cochinchinensis*), May Khamphi(*Dalbergia bariensis*), May Long Leng (*Cunninghamia sinensis*)와 주가 규정한 기타 수종과 같은 희귀종과 천연 산림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나무 및 NTFP 수종의 보전이 권장된다. 산림법 06/NA 2007, 제27조.

0 라오스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²⁾

- 지역산림과(District Forestry Unit, DFU)와 지방산림부(Provincial Forestry Section, PFS)가 벌채계획을 작성하고, 지방농림청(Provincial Agriculture and Forestry Office, PAFO)의 승인을 받아 산림청(Department of Forestry, DOF)에 제출한다.

- 산림청이 농림부(MAF)의 검토 및 정부의 승인을 위해 이를 보고하고, 정부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라오스의 모든 산림은 정부소유이며, 벌채를 실행하기 위해 지방농림청(PAFO)이 벌채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시 별도의 계약서 대신 벌채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회의록을 PAFO가 작성합니다. 벌채회사가 벌채한 목재는 목재판매위원회(a timber sale committee)에서 판매합니다. 위원회에는 지역 산업 및 상업 사무소, PAFO, 기타부문 대표자가 조금씩 포함됩니다.

o 라오스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산림청이 인쇄본(hardcopy)과 디지털 저장(softcopy)으로 문서를 보관한다.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The DOF database management system. DOF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모든 관련 문서 검사.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산림청(MAF), 지역산림과(DOF)와 지방산림부(PFS).

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o 라오스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또는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FM-FSC.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 열대우림연합(Rianforest Alliance, RA).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10,000 헥타르이며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o 라오스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기술 가이드라인.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모든 관련 문서 검사.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 생산림의 목재벌채 및 운송의 관리 연속성 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Chain of Custody (CoC) Control of Timber Harvesting & Transport in Production Forest), No 0962/DoF, 2010년 4월 9일.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관리 연속성(CoC) 가이드라인과 고시번호 0002/MOIC 준수 검사. 2018년 1월 3일.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FM-FSC만 10,000 헥타르.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0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라오스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없다.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라오스의 합법성 증명 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해당 없음.

기타

0 라오스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 가공산업법(Processing Industry law).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고시번호(Notification No). 0002/MOIC. 2018년 1월 3일.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 법과 규정에 따른다.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법과 규정에 따른다.

· F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네.

0 라오스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몇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Laos CSG>

Department of forestry, Lao PDR would like to provide you some information concern with legal timber and timber products to your questionnaire by referring to the attached temperate. Before that we would like to inform you about general informa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ministry as well a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ill responsible for managing forests and timber;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will responsible for timber products and export. So, please see details below:

1. General aspects.

1.1. How are forest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ownership (public, private, indigenous, etc.)? what is percentage for each classification?

- In general, forest areas in Lao PDR is own by government 100%.

1.2. How do you classify forests by types (protected forest, product forest, etc.)?

- Forest areas in Lao PDR are divided in three categories, there are Protection Forest, Conservation Forest and Production Forest.

1.3. Who is in the charge of the management of forest? Which department is in charge of the system on restriction of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 Trade, and what is their contract information?

- Department of Forestry (center level); Provincial Forestry Section (provincial level) and District Forestry Unit (district level).³⁾

3) Lao government assign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n collaboration with two ministries concern to lead for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forest:

-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ake responsibility for surveys, harvesting and hauling logging to log yard I and II.
-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being responsible for auction of logging and making contract buyer-seller.
- The Ministry of Finance maintain revenue from selling logging kept in government budget .

2. Aspects related to harvesting permission licenses and permits.

2.1. Do you have any laws to approve or regulate felling? If any, what are the specific articles?

- Annual logging plans shall b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proposal made by the government, forestry law 06/NA 2007, article 49.
- + including regions where harvesting is prohibited and timber species to be protected.

Preservation of tree and NTFP species, particularly the species that become rare and are at risk of extinction in natural forests such as May Dou Lai (*Pterocarpus macrocarpus* sp.), May Kha Nhoung (*Dalbergia cochinchinensis*), May Khamphi (*Dalbergia bariensis*), May Long Leng (*Cunninghamia sinensis*),.....and other species defined by the State, is encouraged to increase and enrich the species, forestry law 06/NA 2007, article 27.

What are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harvesting based on forest ownership and types?

- District forestry unit (DFU) and Provincial forestry section (PFS) prepared logging planning which approved by PAFO and submit to department of forestry (DOF).
- DOF reviews and report to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 for consideration and approval by Government and Government will submit the proposal to National Assembly for approval.

Do you have any system or documents to verify legal harvest?

- The DOF is storage document hardcopy and softcopy.

How is the system managed?

- The DOF database management system.

How do you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issued documents?

- Checking all documents concerned.
- Which ministry and institution in charge of this and who is the person in charge?
Please inform their contract information.
- MAF, DOF and PFS.

3. Aspects Related to Internationally Accepted Certification.

3.1. Do you have certification system (FM or COC) in your country which are accepted internationally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for example, FSC or PEFC?

- FM-FSC.

What is the certification agency?

- Rian Forest Alliance (RA).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such certifications?

- 10,000 ha and will expand more.

4. Mutually Recognized Certification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

4.1. Do you have your own national or private certification system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 Technical Guidelines.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of the certification system?

- Checking all documents concerned.

What system or document verifies the certification details?

- Guidelines on Chain of Custody (CoC) Control of Timber Harvesting & Transport in Production Forest, No 0962/DoF, dated 9, April 2010.

How can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ion details be verified?

- Checking the compliance with CoC guidelines and the notification No. 0002/MOIC. Date 03 Jan 2018.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each certification system?

- Only FM-FSC 10,000 ha.

5. Other Aspects Regarding Harvest Legality Verification.

5.1. Do you have your own distinct system in < Country Name >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other than those mentioned above?

- No.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N/A

How can they verify th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N/A

How much is the forest area in which the system are applied? N/A

Are those systems of < Country Name > accepted in other countries? N/A

6. Other

6.1. Do you have any law for mission or regulation of processing and exporting legally harvested hardwood and legally imported timber or timber products in < Country Name >?

- Processing Industry law.

What are the specific provisions?

- Notification No. 0002/MOIC. Date 03 Jan 2018.

Do you have any systems or documents that can verify legal processing and exporting?

- Follows the Laws and regulations.

How can authenticity of the systems and documents be verified?

- Follows the Laws and regulations.

In case of exporting combined and processed imported and domestic raw materials such as flitches, glued laminated timber, laminated floorboard, plywood, furniture, do you have any systems or documents that can verify the content and legality of the imported and domestic raw materials?

- Yes.

Do you have private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illegally harvested timber trade prohibition systems, such as verification of legality of exported and imported timber or timber products, tracking background of supply chain and identification of legality?

- There are several projects intend to develop systems 'on going' .